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2022. 12. 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시설장비), 044-202-6932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법 제4조제1호"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일용직"을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4조제1호"를 각각 "법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법 제4조제1호"를 "(법 제4조"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 중 "연구개발과제의"를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를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법 제4조제1호"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5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
 2.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 <16>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협약 체결 당시"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의 원래계획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수당을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제28조제2항 중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를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1,000,000원"을 "1,3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800,000원"을 "2,200,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500,000원"을 "3,000,000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를 "학생연구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기 근로소득 및 창업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4조제1호"를 각각 "법 제4조"로 한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에서 기관 공통 비용을 사용하려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공통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있는"을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6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5조제2항 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지급받는 즉시"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를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로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 제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으로 하고, 제93조제3항제4호 중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현황"을 "학생인건비 현황"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3조제7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처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 취소일과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를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보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고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3.의 계상기준란 제3호 중 "제15조제3호"를 "제15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기호(□)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항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26
	한국기계연구원	13.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7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5
	한국식품연구원	21.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09
	한국원자력연구원	24.22
	한국재료연구원	10.91
	한국전기연구원	11.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10
	한국천문연구원	2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9
	한국한의학연구원	23.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7.96
	한국화학연구원	20.03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5.34
	극지연구소	15.95
	녹색기술센터	13.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82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세계김치연구소	21.42
	안전성평가연구소	16.89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3.08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45
	울산과학기술원	27.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1
	한국과학기술원	21.93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3
	한국세라믹기술원	16.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43
	한국원자력의학원	28.7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4
특정연구기관의 부설 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88
	고등과학원	19.32
	나노융합기술원	15.09
	한국뇌연구원	20.54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4.56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4.93
	다이텍연구원	11.83
	중소조선연구원	20.42
	한국광기술원	20.28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6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8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52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4.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8.60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8.6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2.0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0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00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30.45	군산대학교	21.69
가톨릭관동대학교	26.85	극동대학교	26.10
가톨릭대학교	27.41	금강대학교	27.90
강릉원주대학교	28.00	금오공과대학교	29.40
강원대학교	26.95	나사렛대학교	14.17
건국대학교	28.98	남부대학교	27.55
건양대학교	27.70	남서울대학교	30.4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9.32	단국대학교	29.94
경기대학교	28.70	대구가톨릭대학교	31.17
경남대학교	28.30	대구대학교	30.45
경북대학교	30.10	대구한의대학교	30.10
경상국립대학교	25.01	대림대학교	9.73
경성대학교	24.76	대전대학교	27.15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경운대학교	16.57	대진대학교	32.55
경인교육대학교	28.02	덕성여자대학교	29.72
경주대학교	26.60	동국대학교	29.31
경희대학교	26.61	동덕여자대학교	29.72
계명대학교	27.33	동명대학교	27.36
고려대학교	27.09	동서대학교	30.45
고신대학교	28.70	동신대학교	26.60
공주대학교	28.70	동아대학교	30.10
광운대학교	30.45	동양대학교	26.49
광주교육대학교	19.15	동양미래대학교	9.35
광주대학교	31.50	동의대학교	29.40
광주여자대학교	12.32	명지대학교	28.50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15.30	목원대학교	30.75
국민대학교	30.45	목포대학교	20.47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4.58	목포해양대학교	19.70
배재대학교	31.50	영남대학교	27.77
백석대학교	31.50	영산대학교	21.38
백석문화대학교	6.68	용인대학교	26.10
부경대학교	28.10	우석대학교	29.72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우송대학교	30.45
부산대학교	24.81	울산과학대학교	21.95
부산외국어대학교	30.45	울산대학교	27.65
부천대학교	17.26	원광대학교	30.45
삼육대학교	31.50	위덕대학교	13.55
상명대학교	30.00	울지대학교	18.31
상지대학교	25.62	이화여자대학교	29.40
서강대학교	29.98	인덕대학교	21.43
서경대학교	21.85	인제대학교	28.4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45	인천대학교	31.50
서울교육대학교	29.72	인하공업전문대학	25.07
서울대학교	30.45	인하대학교	29.40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31.17	전남대학교	27.01
서울시립대학교	27.34	전북대학교	27.05
서울여자대학교	30.75	전주대학교	31.17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서원대학교	31.50	제주국제대학교	8.50
서일대학교	13.27	제주대학교	24.86
전문대학교	21.71	제주한라대학교	14.25
성결대학교	14.57	조선대학교	30.45
성공회대학교	26.60	중부대학교	19.66
성균관대학교	30.08	중앙대학교	25.10
성신여자대학교	29.40	중원대학교	28.50
세명대학교	20.12	차의과학대학교	28.41
세종대학교	28.26	창신대학교	22.52
수원대학교	28.51	창원대학교	24.55
숙명여자대학교	31.50	청운대학교	30.00
순천대학교	22.18	청주대학교	26.19
순천향대학교	26.91	충남대학교	21.82
송실대학교	30.45	충북대학교	25.20
신라대학교	30.45	평택대학교	19.99
아주대학교	29.40	포항공과대학교	29.29
안동대학교	27.43	한경대학교	25.20
안양대학교	21.19	한국교원대학교	24.78
연세대학교	28.49	한국교통대학교	29.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45	한라대학교	24.28
한국농수산대학교	15.9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76	한림대학교	23.1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58	한밭대학교	31.50
한국성서대학교	5.00	한서대학교	29.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7.00	한성대학교	29.00
한국외국어대학교	30.10	한신대학교	23.48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1.77	한양대학교	28.7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20	한양여자대학교	27.55
한국체육대학교	21.28	협성대학교	24.25
한국항공대학교	29.40	호남대학교	24.50
한국해양대학교	24.26	호서대학교	27.63
한남대학교	25.01	홍익대학교	28.00
한동대학교	26.76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삼성서울병원	21.9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3
	한국선급	19.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6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9.22
	한국조명ICT연구원	21.55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운영"을 "연구참여 협약"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없음"을 "없음"으로 하며, 같은 서식 가목 중 "수행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서식 마목 중 "침해 하지"를 "침해하지"로 하며, 같은 서식 사목 중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운영"을 "연구참여 협약"으로 하고 3. 기타 협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협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협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상기내용"을 "위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4조제3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제3항"으로, 같은 서식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상기"를 "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에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 산재보험료

별지 제19호서식에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 산재보험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3항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제16조제8호, 제25조제9항제1호,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
- 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확대(안 제10조제10호, 제11호)
- 다.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수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안 제10조제4호, 제23조제5항제1호, 제28조제2항, 제43조제5항)
- 라. 규정의 본래 취지 반영을 위한 규정 명확화(안 제25조제3항)
- 마.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5조제14항제5호, 제108조제3항, 별표 4, 별지 7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 바. 신설된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의 사용기준 마련(안 제25조제15항, 제16항)
- 사. 연구수당 증액불가 기준 완화(안 제26조제2항, 제3항)
- 아. 학생연구자 처우를 위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안 제40조제3항제1호)
- 자. 학생인건비제도의 행정 간소화(안 제40조제2항 단서, 제90조제1항, 제91조제2항 단서, 별지10호, 11호 삭제)
- 차. 영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기준 명확화(안 제66조제1항)
- 카. 종이 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의무 완화(안 제72조제3항)
-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 명확화(안 제73조제1항제4호, 제6호)
-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대상 완화(안 제73조제1항제5호 나목)
- 하. 연구수당 기준 완화 및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등에 따른 사전승인 사항 추가(안 제73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2호)
- 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의 사용용도 확대(안 제75조제2항 본문)
- 너.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의 유연화(안 제91조제3항)
- 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관리 및 방지 제고(안 제93조제7항 신설, 제94조제1항제1호)
- 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후 행정 명확화(안 제94조제4항, 제6항)
- 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3.1. 시행)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16조제1항, 제2항, 별표 7, 별표

8 삭제)

버.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에 따른 별표 수정(안 별표 6)

서. 간접비 사용용도 추가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8, 19호 서식)